

ESG Policy Book

한화토탈에너지스 ESG 정책집

Hanwha TotalEnergies Petrochemical

Version 1 (2023. 12)

경영원칙

<u>한화토탈에너지스</u>는 안전, 원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글로벌 케미칼 & 에너지 리더를 지향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전, 헌신, 정도'를 전직원이 함양하고 지켜가야 할 핵심 가치(HTC Value)로 삼는다. 또한,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 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의 행동 기준이 되는 『경영 원칙』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한다. 또한, 회사는 UN 글로벌 콤팩트,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가이드라인 및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준수한다.

[제1원칙] 안전보건환경 중심의 경영활동

- 1-1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 1-2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한다.

[제2원칙] 법과 윤리의 준수

- 2-1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2-2 법규와 상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한다.
- 2-3 정확한 회계기록을 통해 재무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 2-4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성을 유지한다.

[제3원칙] 깨끗한 조직문화 유지

- 3-1 모든 경영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 3-2 회사 및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3-3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형성한다.

[제4원칙] 고객, 주주, 직원 존중

- 4-1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 4-2 주주가치 지향적 경영을 추구한다.
- 4-3 직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5원칙]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 5-1 기업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5-2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실천한다.
- 5-3 협력회사와 상생협력의 관계를 수립한다.
- 5-4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안전보건환경경영

안전, 보건, 환경을 회사의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이자 과제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

회사는 안전보건환경품질(이하 SHEQ)이 인류 사회에 풍요로운 삶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번영과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인식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SHEQ의 엄격한 기준과 모범사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하며,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든 활동에 적용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전보건환경품질 경영방침

1. 규정 준수

국내·외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한 내부 SHEQ 기준을 수립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및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SHEQ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내 기준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이행에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한다.

2. 지속 개선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활동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원, 환경 및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SHEQ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검토를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사고 예방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임직원,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작업절차, 공정안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

4. 전원 참여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는 교육을 이수하고, SHEQ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율적인 SHEQ 경영 활동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임직원 및 협력사로부터 개선 제안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5. 투명 경영

SHEQ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든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소통한다. 또한, 매년 ESG보고서를 통해 활동 및 성과 진행 상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한다.



윤리경영

건전한 기업 윤리와 깨끗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글로벌 케미칼 & 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윤리경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경영원칙,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임직원 대상의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윤리적인 조 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윤리헌장

- 01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임직원, 협력사, 주주와 함께 가치창출의 동 반자로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 의 번영을 추구한다.
- 02 우리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법규와 도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 03 우리는 도전, 헌신, 정도의 핵심가치를 중시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04 우리는 정직과 성실로써 맏은 바 업무에 최 선을 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 직문화를 창출 한다.

윤리강령

안전,건강,환경

모든 임직원은 업무 활동에 있어 안전, 건강,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자율성, 창의성, 도전정신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도전정신을 존중한다.

책임

회사의 경영 철학과 목표 및 가치를 이해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깨끗한 조직 유지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 존중

사업 비밀 등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정보 및 보안 기록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지적 재산으로 기록·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건전한 동료 관계

건전한 동료 관계를 유지한다.

건전한 조직문화

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동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 문화를 발전시킨다.

정치적 행위 관련

회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원칙 준수 의무

모든 직원들은 비즈니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 조직 책임자는 조직 내 직원들이 비즈니스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준법경영

회사의 사회적 책임, 공정경쟁, 부패방지가 회사 경영의 중요요소임을 인식하고, 정도경영을 회사 핵심가치로 설정한다. CEO 직속의 준법지원팀을 구성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 시 법·규제·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Compliance Program (컴플라이언스 체계, 컴플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교육,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운영한다.

Compliance Program

준법지원팀은 임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해당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기준,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준법지원팀은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점검활동을 실시하며, 각 임직원도 해당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각 임직원은 연 1회의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참석하며, 기타 계층별/직무별/특별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준법의식을 향상한다. 이외에도 준법지원팀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이 사회에 컴플라이언스 활동과 계획을 보고한다.

1. 컴플라이언스 체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사회 보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기준 운영

2. 컴플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준법경영 메시지 전파, HTC COMPLIANCE WEEK 개최,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배포

3. 컴플라이언스 교육

전 임직원 대상 공통 교육, 계층별/직무별/특별교육 실시

4. 컴플라이언스 점검

준법지원팀 주관의 국내/해외 정기 점검, 임직원 주관의 자율점검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

인권경영

회사는 '열정과 도전' '효율과 합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국제노동기구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 그리고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노력하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권경영 방침

1. 차별없는 근무 환경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성별,출생지, 정치적 견해,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나이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2. 임금 및 복리후생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처우를 제공하고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노동법에 따라 보장된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한다.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상호협의를 통해 도출된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4. 강제 노동 금지 및 근로시간 관리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는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5. 아동노동 금지 어떤 형태의 아동노동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6. 산업안전 보장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든 공급사,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공급사 및 협력회사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8. 환경권 보장 환경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순환 등을 위해 노력한다.
- 9. 소비자인권 보호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지속가능 공급망 정책

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품 및 용역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모든 형태의 협력사에게 노동 인권, 안전 보건, 환경, 윤리 경영 측면에서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회사의 ESG 경영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협력사에서의 ESG 관련 잠재 또는 실질리스크가 식별되었을 경우 시정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는 국제 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협력사 ESG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 강령은 회사를 포함한 회사 공급망 전반에 있는 협력사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따라 개정될 수 있다.

노동인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는 직접고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단기 계약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안전 보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생산 차질 최소화, 근로자 근속 유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해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경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기업 운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윤리 경영

경영활동에 있어서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한다.

친환경 구매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자원 낭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원 절감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급망 실사

신규/기존 협력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실질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감소/예방/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이하 "회사")의 협력사 행동강령은 회사가 협력사에게 노동 인권, 안전 보건, 환경, 윤리 경영 측면에서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강령을 통해 회사의 모는 협력사가 회사의 ESG 경영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강령은 회사에게 제품 및 용역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모든 형태의 협력사에 적용되며, 협력사는 본 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해당 협력사의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은 국제 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강령과 현지 법규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1. 노동인권

협력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직접고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단기 계약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자발적 근로

협력사의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 야 합니다. 협력사는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 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그 대리인은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채용 수수료 또는 보증금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1.2 미성년 근로자 보호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협력 사는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들 을 잔업, 야간근무를 포함해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근로 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 사는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 보복, 위협, 괴롭힘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 관행에 대해 협력사의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 해야 하며 임금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과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6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교육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는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 보복, 위협, 괴롭힘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 관행에 대해 협력사의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보건

협력사는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생산 차질 최소화, 근로자 근속 유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해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 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근로자가 안전 위험(화학물질, 감전,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조치, 예방적 차원의 유지 보수, 안전한 작업 절차(잠금장치, 보호장치) 구축을 통해 통제 및 관리해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기 명시된 수단으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수 없는 경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를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제거 또는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응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비상사태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 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탈출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 복구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 장려, 산업 재해 및 질병 분류 및 기록하며, 필요한 의학적 치료 제공,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 하는 시정조치, 휴 직한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산업 보건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법적·제도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5 육체 노동

협력사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6 설비 안전관리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기계장치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 연동 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2.7 위생, 식품 및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협력사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구,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배치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배치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협력사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업 운영으로 발생시킬수 있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취득

협력사는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등)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협력사는 오염원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을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최소화 또는 제 거하여야 합니다. 물,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 등의 천연 자원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 지 관리 강화, 대체 자재 사용, 자원 보존, 자재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되 어야 합니다.

3.3 유해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4 고형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비 유해성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기,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3.5 대기오염 배출

협력사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및 연소 부산물에 대해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규에 따라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대기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6 물질 규제

협력사는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회사의 요 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7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의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및 모니터링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 해야 하고,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폐수처리 이전에 특성화, 모니터링,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하며, 최적의 성능 및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밀폐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3.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회사의 요청 시,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축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윤리 경영

협력사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1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과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 니다.

4.2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협력사는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3 정보 공개

협력사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산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4.4 지식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6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기밀성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4.7 책임 있는 광물 관리

협력사는 국제 사회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되며,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8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